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20047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200471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0가합595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석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한철상

변론종결 2024. 8. 30.

판결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0가합5959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D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9. 체결한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에서 스크린골프장의 영업권, 영업권리금, 시설물 일체를 8억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은 44,057,575원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057,5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밑에서 4행 중 “AQ리”를 “AR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2면 마지막 행 중

“2019. 10. 11.자”를 “2019. 10. 11. 자 및 같은 해 11. 4. 자”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본문 11행 중 “소극재산 8,836,825,277원”을 “소극재산 8,836,824,967원”으로, 12행 중 “19,904,474원”을 “19,904,784원”으로, 14행 중 “202,909,526원”을 “202,909,216원”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각주4)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해당 부동산은 남양주 AS아파트 AT호, 포천시 E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이고, 실제로는 매각대금 6,956,000,000원에 매각되었다.』

○ 제1심 판결서 9면 마지막 행 중 “8,836,825,277원”을 “8,836,824,967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3행 중 “총 8,836,825,277원(= 채무원금 8,810,610,807원 + 지연손해금 26,214,470원)”을 “총 8,836,824,967원(= 채무원금 8,810,610,497원 + 지연손해금 26,214,470원)”으로, 제1심 판결서 10~11면 표 중 순번 13의 채무원금 “11,733,360”을 “11,733,050”으로, ‘원금 합계’란의 채무원금 “8,810,610,807”을 “8,810,610,497”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표 아래 5행 중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로, 9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의 대상인 영업의 자산 대부분이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리스물건인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영업 자산(금융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 지위) 일체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의 대상인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영업의 가액 중 유형재산(스크린골프 시설 8식, GDR 18대)의 감정평가액이 219,925,000원으로 전체 가액 222,814,000원의 약 98.7%를 차지하는 사실, 위 유형재산의 소유권은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인 N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에 유보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은 스크린골프 시설 및 GDR 설비 등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영업양도계약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시키면 적어도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을 통해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필수설비를 그대로 이전받아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를 이용하여 동일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영업의 양도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영업의 가액 중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유형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을 리스물건의 매매 또는 리스이용자의 지위 이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키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지 않고, 그 재산권에 관련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 외에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도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고 금전적 평가가 가능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참조), 리스이용권도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양도가 가능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으며, 앞서 본바와 같이 개별 재산과 일체로서 일괄하여 압류환가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의 대상에는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재산을 포함하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D영농조합법인의 리스이용자 지위 내지 리스이용권도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일부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최성보, 판사 이준현